

회사가 '근로자 아님' 증명해야… 노동 분쟁구조 뒤집힌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추진

노무 제공 입증 땐 근로자 '추정'
퇴직금·수당 미지급, 체불 전환
노동부 지시 불응 땐 처벌 가능
'가짜 3.3 프리랜서' 구조에 제동
연차·가산수당도 분쟁 땐 보호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시행되면 노동 분쟁의 출발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가 보호를 받기 위해 스스로 "근로자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된다.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을 둘러싼 장기간 공방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셈이다.

가장 큰 변화는 임금·퇴직금 체불 사건이다. 지금까지 프리랜서나 특고 종사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진정이나 고소가 각하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체불 사건 조사과정에서 근로자로 판단되면, 노동부가 퇴직금·가산수당 지급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진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8.15 광복 80주년 기념 양대노총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

그간 "근로계약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했던 관행이 통하지 않게 된다. 계약서가 프리랜서라도 실제로 지휘·종속관계가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적용된다.

근로자 추정제는 자동으로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 다만 계약 해지(해고) 연차휴가나 주40시간 초과 가산수당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당 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소급 적용된다. 외형상 개인사업자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체불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겉으로는 노무제공 자여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주40시간 초과 가산수당 미지급 등이 체불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가 근로자성을 인정하면 가산수당 지급을 지도·명령하고, 불이행 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며 "민사로는 체불금 확인 소송이나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의 직접적인 타깃은 이른바 '가짜 3.3 계약'이다. 세금·규제 회피를 위해 무너만 프리랜서인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관리·통제 아래 일

해온 경우다.

특히, 노무제공자가 계약 당시 4대 보험 가입이나 주52시간 규제 적용을 원치 않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계약이 끝난 뒤 근로자 추정제를 근거로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짜 3.3 계약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해도 애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MBC 기상캐스터로 일하다 숨진 고 오요안나씨 사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근로자 추정제가 되입

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사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며 "이때 사측은 '이 사람은 나에게 노무를 제공했지만, 지휘·종속 관계는 아니어서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사측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근로자로 인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은 강한 지휘·감독을 요구하지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지휘·감독이 약했더라도 다 일하는 사람으로 보겠다는 것"이라며 "웹툰 작가들도 예를 들면 담당자가 언제까지 납기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완성됐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할텐데, 이 정도만 돼도 다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웹툰 작가 외에도 방송 스태프, 콘텐츠 제작 프리랜서 등도 마찬가지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단일 사용자 개념도 바뀐다. 배달기사의 경우 수수료 분쟁은 플랫폼 기업이, 고립된 문제는 소속 회사가 각각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다. 사안별로 권리·의무 관계를 따지는 구조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산업진흥 '선별 규제' 실험… 스타트업 부담·시민사회 우려 공존

인공지능 기본법

<上> 자율과 통제 사이 줄타기

내일부터 시행, 세계 첫 전면 적용
산업진흥형 선별규제로 EU와 차별화
고영향 AI 인간관리, 생성형 표시 강화
스타트업 부담, 시민사회 우려 지속

오는 22일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전면 시행이라는 상징성 속에서, 이 법이 산업 혁신을 촉진할 제도적 기반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규제 부담으로 작용할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24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이 가결되는 모습. /뉴스

19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번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전 규제보

다는 사후 관리와 자율 규범을 중심으로 설계돼, 산업 진흥과 위험 관리의 균형을 의도적으로 맞춘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은 규제 중심인 EU의 AI Act와는 궤를 달리한다. EU가 AI의 위험 수준을 네 단계로 나눠 좀처럼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한국은 산업 진흥에 더 무게를 둔 '선별적 규제' 모델을 채택했다. 규제 대상은 모든 AI가 아니라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고영향, 고성능, 생성형 AI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한정된다. 이는 기술 혁신의 동력을 꺾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역에서만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법적 적용 대상인 AI 시스템의 정의도 명확해졌다. 목표·자율성·적응성·결과물 추론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시

스템만이 법의 테두리에 들어온다. 단순히 정해진 규칙을 반복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은 제외되며, 데이터를 학습해 스스로 판단하고 예측하는 시스템만이 인공지능으로 분류된다. 또한 법은 AI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이용자와 결과물에 영향을 받는 자의 역할을 구분하여 향후 발생할 책임 소재의 기틀을 마련했다.

가장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고영향 인공지능'은 금융, 고용, 의료 등 개인의 권리와 생명에 직결된 분야로 특정됐다. 대출 심사나 채용 평가에 쓰이는 AI는 이제 사람이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조치를 증명해야 한다. 또한 텍스트나 영상을 만드는 생성형 AI에는 워터마크 부착 등 표시 의무가 부여된다. 이용자가 자신이 마

주한 결과물이 AI의 창작물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정부는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두고 사실조사권 집행을 최소화하며 '산업 길라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스타트업 업계는 여전히 공포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과 달리 규제 준수를 위한 법무 대응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에는 법 시행 자체가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AI 스타트업의 대다수가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내 AI 스타트업 101곳을 조사한 결과, 98%가 AI 기본법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서현 기자 seoh@

규모별 규제 벽에 성장멈춘 기업들… GDP 111조 손실

대한상의 SGI 분석, GDP 4.8% 감소
50인·300인 문턱에 기업 '안주 전략'
성과 중심지원·성장유인 제도전환 제언

기업이 성장해 고용을 늘릴수록 혜택은 사라지고 규제와 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한국 특유의 '성장 페널티(Growth Penalty)'가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분석이나왔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나 셔티브(SGI)가 발표한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 진단과 기업생태계 혁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50

인·300인 등 규제 장벽 앞에서 인위적으로 성장을 억제하거나 분할을 선택하는 이른바 '안주 전략(Bunching)'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이러한 행태가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저성장을 고착화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SGI는 "기업이 성장을 멈추면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의 채용 여력은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소기업으로 인력이 몰리면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하락한다"며 "여기에 경직된 노동 시장까지 더해져 실업이 늘거나 비효율적인 부문에 배치된 인력이 고착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SGI가 구조적 모형을 활용해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생태계 왜곡으로 발생하는 GDP 손실은 약 4.8%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25년 기준 약 111조 원 규모로, 최근 3년간 (2022~2025년) 국내 GDP 누적 증가액(약 103조 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SGI는 기업 성장 사다리가 사실상 가능을 상실한 점도 지적했다. 소기업이 5년 뒤에도 10~49인 규모에 머무는 비율은 최근 60%에 육박해 1990년대(40%대)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소기업이 중규모 기

업으로 도약할 확률은 과거 3~4%에서 최근 2%대로 낮아졌고, 대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0.05% 미만으로 떨어져 사실상 차단된 상태라는 분석이다.

SGI는 해법으로 ▲Up-or-Out 지원 체계 구축 ▲투자 중심 자금 조달 생태계 육성 ▲성장유인형 지원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단순히 기업 연령이나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매출·고용 증가 등 성과를 기준으로 스케일업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성과가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과감히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담보 위주의 대출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와 민간 모험자본 확대를 통해 투자 중심의 성장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SGI는 성장 유인형 조세·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기업이 일정 규모를 넘는 순간 혜택은 사라지고 규제와 의무가 급격히 늘어나는 이른바 '계단식 규제'가 기업들의 성장 의지를 구조적으로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SGI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를 신설하고, 투자·고용 확대 등 국가 경제 기여도에 비례해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성장이 곧 혜택'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와 조세 제도의 과감한 재설계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인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